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6월 인정기준 안내

□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6차) 일부변경”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496호, 2020. 6. 3.)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6차)’ 일부변경 안내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인의 잦은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 (가산기준)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0.2점 인정
※ 월 16회를 제공하더라도 최대 0.2점만 인정됨.
- (준수사항) ① 외부강사 대상으로 감염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여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붙임 참조)을 별도로 작성·보관
② 모니터링 결과 위험요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③ 외부강사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포함한 손 위생 실시 후 활동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5판)
- (유의사항) 시설장의 판단 하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산은 인정하나,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외부인 접촉활동 자제를 당부
- (적용월) 2020. 6. (1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작성 서식

서식

[illegible]

1) 발열 카메라 사용하여 인지 시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직접 체온계로 측정(측정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며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3) 감염 위험요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출입 금지